

의안번호	2203882
의 퇴 인	이상식 의원
회 답 일	2024. 9. 20.
추계번호	24A329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둠(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 국가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제1항) - 1. 제4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와 경쟁력 강화 지원 - 2. 제17조에 따른 특별한 지원 - 3. 제18조에 따른 주민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지원 - 4. 그 밖에 개발사업을 위하여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6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 미대상: 유사사례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¹⁾ 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회의참석수당 등 ²⁾ 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기본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2.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3항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한 사항
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관련 협의 및 이행 촉진에 관한 사항

2. 상세 사유

- 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와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해 국가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안 제20조는 국가로 하여금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와 경쟁력 강화 지원 등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진될 사업 등의 내용 및 규모와 기준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며,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가 어려움
- 제정안은 재정소요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5. 그 밖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행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는 연평균 3회 개최되고 있으며, 민간위원 6명에 대하여 회의 참석 1회당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위원회 운영을 위해 180만원/연 정도 소요됨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